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근거 신설〉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9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소방복지위원회”라 함)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이 중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1)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이하 “시·도지사협의체”라 함)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신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단 신설> 2.·3. (생략) ④ ~ ⑨ (생략)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²⁾.

2)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동 개정안은 법률 제20865호와 시행일을 일치시키고 있음.

현재 소방청은 민간위원 3인, 공무원인 위원 7인 총 10명의 위원으로 소방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³⁾.

그런데 현재의 소방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관련 규정에는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무원인 위원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

이에 우리위원회는 2025년에 소방복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문에 명시하여 소방복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이 중에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현행 소방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상세 현황은 [참고] 참조

4) 동 법안은 2025년 3월 13일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5년 4월 1일에 법률 제20865호로 공포되었으며,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방복지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현행 (~ 2026.4.1.)	법률 제20865호 (2026.4.2.~)	개정안
위원 정수	10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전체의 1/3 이상	
위원장	소방청 차장	(좌 동)	
위원 구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좌 동)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u>시·도 지사 협의체가 추천 하는 사람 포함</u>
	- 중앙행정기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좌 동)	
	- 소방청 소속 공무원	- 소방청 또는 <u>시·도소 방본부</u> 5)소속 공무원	

5) 현재 시·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청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정부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구성은 해당 위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소방공무원 중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 중 98.9% 이고⁶⁾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⁷⁾,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소방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 증진, 나아가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6)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앙		시·도	
		인원	%	인원	%
정 원	66,798	724	1.08%	66,074	98.92%
현 원	65,373	690	1.06%	64,683	98.94%

기준일: '25. 7. 1.(일반직 등 정원 320명 별도)

7) 소방공무원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기준인원	총액	국비 (소교세)	비율	지방비	비율
2020	55,275	4,056,746	331,840	9.5	3,724,906	90.5
2021	60,004	4,646,456	565,675	13.6	4,080,781	86.4
2022	63,287	5,125,979	491,809	10.5	4,634,170	89.5
2023	65,231	5,523,227	548,127	10.8	4,975,100	89.2
2024	65,751	6,001,951	477,576	8.6	5,524,375	91.4
2025	65,947	6,121,560	524,772	9.2	5,596,788	90.8

(자료: 소방청)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⁸⁾,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8) 출처: 법제처,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법령정비과제 의견 회신 요청(20205. 9. 2.) 붙임 자료

참고

현행 소방복지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소방청)

1. 구성 현황(2025.6. 30. 기준)

구 분	위원 구성(10명)
위원장(1명)	소방청 차장
정부위원(6명)	소방청(3), 행정안전부(1), 기획재정부(1), 보건복지부(1)
민간위원(3명)	환경안전공학과 교수(1), 직업환경의학교 교수 (1), 정신건강의학과 교수(1)

2. 최근 5년간 소방복지위원회 활동 내역(2025.6. 30. 기준)

구 분	총계	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1
2022년	2	2		2
2023년	1	1		1
2024년	1	1	1	
2025년	1	1		1
총계	6	6	1	5